



가정법원에서의 이민자 권리

Hotline: (212) 343-1122 • www.LIFTonline.org

이 안내서에서 사용된 주요 전문용어의 뜻

외국인(non-citizen): 미국 내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. 법적 이민 서류가 있는 이들도 포함됩니다.

다. 불법 체류자 (undocumented; 언다큐먼트드):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이민 법률 서류가 만기된 외국인. 만기의 뜻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.

영주권자 (lawful permanent resident; 로풀 퍼머넌트 래지던트):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외국인. 이는 가장 보장된 이민 상태로 그린카드(green card)라고도 불립니다.

미국 시민(U.S. citizen; 유에스 시티즌): 미국이나 미국 영토 또는 푸에르토리코 (Puerto Rico) 같이 미국 자치령내에서 태어난 사람.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 태어난 아이도 포함됩니다.

어떤 이민자는 귀화(naturalization; 내추럴라이제이션)를 통해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. 제이션)를 통해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.



내가 외국인이거나 불법체류자면 가정법원에 청원서 (Petition; 페티션) 를 낼 수 있나요?

그렇습니다. 귀하의 법적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귀하는 가정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. 청원서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서면요청입니다.

부모가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나요?



부모가 아이의 모든 양육권 (custody; 커스터디)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내린 특정한 양육권 명령이 없다면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. 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. 때때로 헤어진 부모사이에 공동 양육권 (Joint Custody; 조인트 커스터디)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공동 양육권의 경우 한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,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나 법원의 허가 없이 아이가 여행할 수 없다고 하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미국 밖으로 이사 가고 양육비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어떻게 양육비를 받나요?



지방 양육비 사무실에 가시면 다른 나라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. 그 사무실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와 줍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양육비 시행청(888.208.4485)에 연락하세요.

미국시민이 아니면 보호령을 받을 수 있나요?

그렇습니다. 보호령 (order of protection; 오더 오브 프로텍션)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정법원 내에 있는 세이프 호라이즌을 찾아가세요.

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입니다. 배우자 도움없이 법적 영구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?

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입니다. 배우자 도움 없이 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?

그렇습니다. 외국인이거나 불법 체류자로 미국 시민이나 법적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으면 여성 폭력방지법 (Violence Against Women Act; 바이올런스 어겐스트 워먼 액트, 줄여서 VAWA)을 통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VAWA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:

- 본인이 피해자이면 본인과 본인 자식들을 위해 법적 영주권을 이민국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; 유에스 시티즌쉽 앤드 이미그레이션 서비스, 줄여서 USCIS, 예전 이름은 “INS”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는 이 과정에 참여를 안 합니다. 배우자가 모르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- 본인이 피해자이고 강제 이송 과정을 밟고 있으면, 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고,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며,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경우 힘든 상황이 될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민 법원에 이송 취소(cancellation of removal: 캔슬레이션 오브 리무벌)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. 이민 법원은 강제이송을 정지하고 법적신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.

유의사항: 여자가 아니더라도 VAWA로 인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인데 결혼을 안 했으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?

미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 될 수 있는 U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U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범죄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사람, 여기에는 가정폭력, 강간, 성폭행, 성매매, 고문 등등이 포함됩니다.

- 경찰, 검사나 연방 검사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(law enforcement agency;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)의 수사나 기소(prosecution; 프로시큐션)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. 여기에서 기소는 어떤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법원에 데려오는것입니다.

위탁 가정에 있거나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불법 체류 아동이 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?

그렇습니다. 불법 체류 아동은 USCIS에 신청해서 특별 이민 아동 신분(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, SIJS; 스페셜 이미그런트 주버나일 스탠더스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SIJS는 이민 아동이 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
- 아동이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후견인 (guardianship; 가디언십)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
- 아동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인데,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
-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어야 합니다.
- 아동은 미혼이어야 하고 USCIS에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21살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위 사항을 증명 하기위해 아동은 가정 법원에서 나온 법령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서(Administration for Children's Service, ACS;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포 칠드런즈 서비스)에서 작성된 진술서(affidavit; 애피대빗)가 있어야 합니다. 진술서는 법적 서류입니다.

이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신청서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작성 하여야 합니다. 특히 아동은 21살이되면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합니다.

유의사항: 아동은 미혼이어야 하고 전과가 없어야 하며,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가지 못하고,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. 또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USCIS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.

아동이 SIJS의 자격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친척이나 입양된 부모가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. 보통 아이는 16세가 되기전에 입양됩니다. 또 정치적 망명 (Political Asylum; 폴리틱얼 어싸일름)이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미국 시민이 외국 아이를 입양하면 그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되나요?

다음과 같은 필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.

- 적어도 입양하는 한쪽의 부모가 미국시민이면
- 아동이 18세 미만이면
- 아동이 미국내에 영주권자로 있으면
- 입양한 부모가 법적, 육체적 양육권 (physical custody; 피지컬 커스더디)을 가지고 있으면. 여기서 육체적 양육권의 뜻은 같이 산다는 걸 말합니다.

가정 법원이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나를 신고 하나요?

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가정 법원은 당신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, 귀하의 소송에 경찰이 연루되어 (예를 들어 당신이 보호령을 어길때(violate; 바이올레이트) 체포 되면 귀하의 이민 신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 어긴 다는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
가정 법원 진행이 이민 신분에 해를 끼칠 수 있나요?



그렇습니다. 가정 법원의 결정은 유죄 판결과 같지 않지만 이민 신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어떤 가정 법원 결정은 (청소년 범죄같은) 임의의 이득(discretionary benefit; 디스크래셔너리 베네핏)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임의의 이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같이 정부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.

가정 법원에서 영주권자가 어떤 보호령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국외 추방(deported; 디포티드)될 수도 있습니다. 국외 추방의 뜻은 강제로 나라를 떠나라는 것 입니다. 가족 단결 프로그램(Family Unity Program; 패밀리 유니티 프로그램)으로 임시적 혜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과실들은 귀하를 무자격자(ineligible; 인엘리저블)로 밝힐(findings; 파인딩)수 있습니다. 밝혀진다는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입니다. 무자격자로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가족 단결 프로그램은 1986년 사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미국내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?

이민에 대한 내용은 뉴욕 이민 정보 센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부터 6시까지 800.566.7636로 전화하세요.

귀하는 가정법원 소송실이나 법정안에서 해당 언어의 통역사를 부탁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. LIFT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.

Hotline: (212) 343-1122 • www.LIFTonline.org